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나21486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나21486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69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단체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 선고 2022. 9. 22.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69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D 임야 3232m²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6㎡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컨테이너, 보도블럭, 조경석을 각 철거하고, ② 별지 도면 표시 24, 23, 25, 26, 27, 28, 29, 5, 30, 31, 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9㎡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사당 및 석축을 철거하고, ③ 별지 도면 표시 31, 30, 6, 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토지 45㎡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 화단을 철거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없으므로"를 "없고,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창국

판사한승철

판사하승수

별지